

**<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>**  
**K-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**  
**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.**

- ◇ 우리 공단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채용 과정에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◇ 지원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적 사항이나 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(예 : 성별, 나이, 사진, 학교명, 출신지역, 종교, 혼인여부, 가족관계 등)

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▲ 모집분야 · 인원 : 기간제근로자 3명 (휴직대체 인력, 정규직 전환과 무관)

모집단위	선발 인원	근무 예정기간
대전지역본부(A)	2명	'25.3.27.~12.19.
대전지역본부(B)	1명	'25.3.27.~10.15.

※ 근무 예정기간에 따라 모집단위가 구분되며, 모집단위별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## 2. 지원자격 및 근무조건

구분	주요내용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학력, 전공, 성별, 연령 등 무관</li> <li>※ 단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임용일 기준 정년(만 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 지원 가능</li> <li>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즉시 근무 가능자 (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)</li> <li>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</li> </ul>
근무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고용형태 :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기간제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무 예정기간: 모집A -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.12.19.(금)까지</li> <li>모집B -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.10.15.(수)까지</li> </ul> </li> <li>◇ 수행업무 : 능력개발, 능력평가 등 공단 주요사업 행정업무 지원</li> <li>◇ 근무지역 :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</li> <li>◇ 급여수준 : 월 2,353,600원(세전)</li> <li>◇ 근무시간: 주5일(월~금) 근무 1일 8시간 (09:00~18:00)</li> <li>◇ 기타 : 4대 보험 가입,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</li> </ul>

### 3. 전형절차 및 일정

#### ▲ 전형 절차



※ 1차(서류)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(면접) 전형단계 응시 가능

#### ▲ 전형 일정(예정) 및 세부사항

구 분	전형 일정(일자)	합격자 발표	비 고
지원서 접수	'25.2.12.(수) 10시 ~ 2.27.(목) 15시까지	-	기간내 접수분만 인정
서류심사	'25.2.28.(금)	'25.3.4.(화) 17시 예정	
면접심사	'25.3.11.(화) 대전지역본부 <면접 장소, 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>	'25.3.19.(수) 17시 예정	

※ 상기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, 변경 시 이메일,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개별안내 예정

#### ▲ 원서접수 :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 제출

○ 채용 담당자 이메일 주소 : kdh1208@hrdkorea.or.kr

#### ▲ 서류심사 : 지원서 기반 심사 진행

○ 평가항목 : 지원동기의 적절성, 업무추진계획의 구체성, 직무관련 경험의 구체성,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자질과 소양

○ 합격자 결정기준 : 모집단위별 서류심사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가산한 총점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~5배수 선발\*

\*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이면 5배수, 2명이면 3배수, 3명이면 2배수를 선발

\*\*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전원 합격처리

#### ▲ 면접심사 : 면접관-지원자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면접 진행

○ 평가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
○ 평가항목 :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

\* 직무설명 자료(별첨) 참고

○ 합격자 결정기준 : 모집단위별 면접전형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1배수 선발

\* 동점자 발생시 ① 서류심사 고득점순 → ② 면접평가 항목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순 → ③ 이후에도 동점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

## 4. 우대 사항

### ○ 우대내용

구 분	내 용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</li> <li>☞ 면접심사 만점의 5% 가점 부여</li> </ul>
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</li> <li>*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</li> <li>*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(예외 :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)</li> <li>☞ 서류·면접심사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 부여</li> </ul>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</li> <li>*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</li> <li>☞ 면접심사 만점의 5% 가점 부여</li> </ul>
한부모 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</li> <li>*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</li> <li>☞ 면접심사 만점의 5% 가점 부여</li> </ul>
북한이탈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</li> <li>*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</li> <li>☞ 면접심사 만점의 5% 가점 부여</li> </ul>
다문화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</li> <li>* 접수 마감일 기준,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</li> <li>☞ 면접심사 만점의 5% 가점 부여</li> </ul>
자립준비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자립준비청년</li> <li>* 접수마감일 기준 상기 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자로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☞ 면접시험 만점의 5% 가점 부여</li> </ul>

※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, 가점 적용 전형의 점수가 만점의 40%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부여

○ 제출서류

제출대상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
장애인	장애인증명서	*모든 서류는 <b>접수마감일(25.2.27) 이후 발급분에 한함</b> *서류상 성명·생일 이외의 인적 사항은 가림 처리 후 제출 *해당 증빙서류는 <b>면접전형 시 원본서류 지참, 제출</b> *전형별 가점 우대 증빙서류이므로 면접전형 당일 미제출 또는 자격부적합 확인 시 가산점 미부여 *지정된 서류 외 다른 서류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
취업지원대상자	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증명서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증명서	
한부모가족	한부모가족 증명서	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	
다문화가족	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사실증명서	
자립준비청년	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	

## 5. 기타 사항

- ▲ 이번 채용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휴직자 조기 복직 등 활용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사유 소멸 전일까지만 근무 가능
- ▲ 지원서는 E-mail로 접수 받으며,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니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 필요
  - 접수마감 시간까지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지원서는 무효 처리함
- ▲ 모집단위(근무 예정 기간이 다름)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,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
- ▲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소(성별, 나이, 학교명 등)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심사에 활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(출신학교 등)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
- ▲ 공고문 내용을 숙지 후 지원하여 주시고, 지원서 작성 착오 또는 누락, 지원자와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▲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 이메일, SMS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임
- ▲ 전형과정에서 지원자의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는 채용예정 인원을 축소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- ▲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추후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▲ 지원서 기재내용, 증빙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허위 사실 기재 및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
  - 지원서는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, 지원서에 기재한 성명과 생일이 신분증과 달리 지원자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
- ▲ 면접심사 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보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심사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▲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
- ▲ 우리 공단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됨 (임용결격 사유 : 붙임1 참조)
- ▲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 예정
- ▲ 기타 채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(042-580-9110)로 문의하시기 바람

2025. 2. 12.

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

## [붙임 1] 공단 임용 결격사유

### < 임용 결격사유 >

제2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 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재직기간 중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8.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,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삭제
10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